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(안)

의안 번호	206

제출년월일 : 1993. 10

제 안 자 : 안 산 시 장

□폐지이유

0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의 기능은 각종 민원사안중 장기간 미해결 또는 재검토를 요하는 사안의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 함으로써 해결도를 높이고자 '93. 3. 17자 안산시 조례 제480호로 제정되었으나

0 '93. 5. 10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시행과 관련 전국 내무관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현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될뿐만 아니라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지침 및 위원회 정비계획에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 통합운영토록 함에 따라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□참고사항

0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지침 ('93. 4. 27, 내무부)

0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('93. 9. 4, 총무 12201 - 2030)

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(안)

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 자 료

國民本位의 『참 奉仕』具現을 위한 刷新課題

『民願1回訪問處理制度』施行指針

長官指揮指示 第7號

安　　山　　市

册 50

o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

o 복합민원처리와 관련,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

o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회시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등

□ 民願1回訪問處理委員會 制度化 定着

o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『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』를 구성

o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

節 次 5 모든 民願處理 審議가 終結되면 主管課는 民願人과 1回訪問 專擔部署에 處理結果를 通報

○ 민원의 보완요구, 중간회시, 최종결과 통보시 주관부서의 담당 책임공무원의 소속·직급·성명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, 책임감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

※ 고무인에시

< 처리담당자 >
○○ 국 ○○ 과 ○○○ (전화 ○○○ - ○○○○)

○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의 재심에서 『반려 또는 불가』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의 재가를 득한후 회신

※ 승인·허가등 수용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시 처리

各種委員會整備計劃

安山市

整備對象委員會內譯

□ 內務部 檢查結果 整備委員會

○ 폐지대상위원회 : 2종

· 행정내부적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로서 관계부서간의 협의로 갈음할수 있는 위원회 (1종)

- 예산집행심의 위원회

· 운영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(1종)

- 농어촌 대체 추진위원회 : '90.11.28 기 폐지 지시

○ 통합대상위원회 : 6종

· 기능및 구성원이 유사.중복되어 관련 위원회에 통합운영함이 효율적인 위원회 (2종)

- 민원 재심의위원회 → 민원조정위원회
-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→ 물가대책위원회

· 대부분 행정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「시.도, 시군구정 조정위원회」로 통합운영함이 효율적인 위원회(4종)

- 이웃돕기 심의위원회
-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추진협의회
-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
- 자동차 운수 인.면허 심사위원회

→ 시정조정위원회

○ 統合對象委員會 ····· 6 種

· 機能 및 構成員이 類似重複되어 關聯 委員會에 統合運營함이 效率的인

委員會 : 2 種

위 원 회 명	설치근거 및 소 관 부 처	통 합 사 유	비 고
1. 민원재심의 위원회	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침 (내무부) 안산시조례제480호 (시민과)	민원조정위원회와 기능중복	내무부에서 통합운영 기 지시 ('93.4.27)
2. 공공요금심의 위원회	지방공공요금심의 위원회. 운영규정 (내무부) 안산시조례제246호	운영실적 지조와 구성인 및 기능이 물가대책위원회와 유사	

#53